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7-08

서 울 고 등 법 원

제 3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19누35239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원고, 항소인	1. A
	2. B
	3. C
	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[redacted]
	담당변호사 [redacted]
피고, 피항소인	[redacted]시 [redacted]구청장
제 1 심 판 결	서울행정법원 2019. 1. 11. 선고 2018구합74082 판결
변 론 종 결	2019. 4. 25.
판 결 선 고	2019. 5. 16.

주 문

1.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7-08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별지 기재 납부통지를 취소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원고들이 이 법원에 이르러 새로이 제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.

2.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

가. 원고들의 주장

피고는 D가 2013년부터 2016년 귀속 재산세를 각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즉시 원고들에게 부과처분을 한 다음 원고들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였어야 한다.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D의 무자력을 확인한 후 즉시 원고들에게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가산세나 가산금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였어야 한다.

그럼에도 피고는 D가 납부기한을 지체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일이 경과한 2018년 6월 내지 7월에 이르러서야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,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, 가산금 부분은 부당하다.

나. 판단

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가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납부고지는 적법한 것이다. 이와 달리 제1차 납세의무자의 체납이 발생하는 즉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할 의무가 피고에게 있다고 할 수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7-08

없다.

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.

3. 결론

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,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문용선

판사 문주형

판사 이수영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7-08

별지

원고들에 대한 처분

처분일	상대방(원고)	귀속연도	재산세(건축물) (단위: 원)	재산세(토지) (단위: 원)	주민세 (법인균등분) (단위: 원)
2018. 6. 19.	A	2013	1,211,300	1,578,100	9,640
		2014	1,133,510	1,510,460	9,640
		2015	1,013,980	1,422,960	
		2016	890,740	1,312,090	
	B	2013	1,211,300	1,578,100	9,640
		2014	1,133,510	1,510,460	9,640
		2015	1,013,980	1,422,960	
		2016	890,740	1,312,090	
	C	2013	3,230,350	4,208,420	25,780
		2014	3,022,880	4,028,130	25,780
		2015	2,704,100	3,794,750	
		2016	2,375,480	3,499,110	

끝.